

2022년 읍 정기 종합감사 결과공개

감 사 개 요

- 감사대상 : 3개 기관 (고한읍, 사북읍, 신동읍)
- 감사기간 : 2022. 10. 17. ~ 11. 03.(기간 중 기관별 4일)
 - 고한읍 : 2022. 10. 17. ~ 10. 21.(※ 19일 제외)
 - 사북읍 : 2022. 10. 24. ~ 10. 27.
 - 신동읍 : 2022. 10. 31. ~ 11. 03.
- 감사범위 : 2019년 7월 ~ 2022년 9월까지 업무전반
- 감사인원 : 기획관 외 10명

I. 총 평

- 2019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3개 읍에서 추진한 군정 업무 전반에 대한 이번 정기 종합감사는 감사의 공정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기관별 1명씩(신동읍 불참) 명예감사관을 위촉하여 감사에 참여하였고,
- 3개 읍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 공직자들이 지역별 여건과 특성에 맞게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사회복지 지원사업, 환경관련 업무, 지역화합 행사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의 발전과 가치를 높이는데 성실히 임하고 있었으며,
 - 지적사항들 중에는 새롭게 강화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련 규정에 대한 인식 부족, 기존 업무행태의 답습, 직무연찬 부족, 민원사무에 대한 기초적 업무처리 미숙 및 이에 대한 중간 관리직 공무원의 지도 감독 소홀에 대한 문제점이 일부 도출되었으며,
 -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담당 공무원들에게 개선해 나가도록 행정지도 위주로 실시하였고, 확인서로 징구된 지적사항들은 타 읍면에 전파 등 개선되어야 할 사항과 행정상·재정상·신분상으로 주의나 시정조치 되어야 할 사항으로 중점 실시하였음.

분야별로 살펴보면

『지출 · 계약분야』

- 지출분야에서는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을 준수하여 지출예산을 집행하여야 함에도, 적정 세출과목이 아닌 예산과목으로 집행하는 사례가 다양하게 지적되었고, 공사비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관리비를 계상하지 않고 계약체결하거나, 적정한 정산처리 없이 준공하여 사업비를 집행한 사례가 있었고, 경로당 운영비·냉난방비를 집행하면서 정산검사 및 보고없이 사업비를 지출하는 등 정산업무에 소홀한 사례가 다수 지적되었음.
- 계약업무 분야에서는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계약 건에 대해서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정기 하자검사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14일 전 최종검사를 미 실시하거나, 계약을 체결할 때 건설업의 업종 및 업종별 업무 내용을 고려하여 계약체결하여야 함에도 공사내용과 상이한 건설업자와 계약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한 사례, 등산로 개설공사를 위한 실시설계 목적의 용역을 추진하면서 법령에 따라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일반측량업을 등록한 자와 부당하게 계약을 체결한 사례, 동일 구조물공사 또는 단일공사의 경우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으나, 2천만원 미만으로 분할 발주하여 수의계약하는 등 부적정하게 계약업무를 처리한 사례가 지적되었음.

『사회복지 · 환경분야』

-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야 하는데, 단순상담으로 일정기간에만 집중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찾아가는 복지상담업무의 소홀함이 지적되었고,
- 환경분야에서는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업무 처리 시 규정된 폐기물처리 적정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 사례가 지적되었음.

『주민등록 · 인감분야』

- 주민등록 및 인감 사무 대부분은 창구 즉결처리 민원으로 대체로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었으나, 「주민등록법」에 명시된 면제사유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증 재발급시 5천원의 수수료가 부과되나 면제대상이 아님에도 수수료 미징수(면제), 전입신고서에 세대주 서명이나 날인, 전입자 확인, 신고인 서명이나 날인 등 신고서상 구비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전입신고 수리, 전입신고 사후확인서에 거주여부 확인사항이 다수 미기재되어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없이 사후확인용 자료 접수 및 편철 등이 지적되었음.
- 인감증명서를 대리발급하면서 위임장의 기재사항인 위임자의 서명 또는 날인, 신분증 종류, 유효기간의 기산 기준이 되는 위임일자 등 오기, 누락 및 미기재 등 미비사항이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 및 보완요구 없이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는 등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에 관한 업무 소홀이 지적되었음

『산업개발 분야』

- 시설 분야에서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량 변동시 해당 공사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아 사업비 과다 지출한 사례, 하도급 대금지급 시 강원대금 알림e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공사대금 청구지급한 사례가 있었음.
- 건축 분야에서는 건축신고 사항에 대하여 신고일부터 1년이 경과하여, 효력상실된 건축신고 사항에 대해 효력상실 고지, 착공신고 및 사용승인 처리 하지 않고 방치된 사례, 건축물의 대지가 2m이상이 도로에 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로지정을 하여야 하나, 도로의 지정없이 건축신고 수리된 사례가 지적되었음. 가설건축물 준치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준치기간 만료된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준치기간 만료 안내, 준치기간 연장 및 철거 지시 등을 하지 않은 업무 소홀 사례가 일부 지적되었음.

- 농업분야에서는 투기 등 매매거래 목적의 농지소유를 방지하고자 농지취득자격증명서(농업경영계획서 포함)의 기재사항을 모두 작성해야 함에도 발급된 농지취득자격증명서에 농업기계·장비 확보방안 등이 미기재 되어 있었음

2022년 3개 읍 종합감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 행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대부분 적법하게 추진하고 있었으나, 인사이동에 따른 인수인계 미숙지, 관련법령에 대한 업무연찬 부족으로 지적사항이 다수 발생하여,

관련 부서에는 직무별로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업무연찬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관련 업무에 대한 수시 지도·감독, 자발적인 업무연찬 여건 마련 등 업무의 체계화를 통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개선해 나갈 필요성이 있으며, 이와 별도로 각 읍에서는

○○읍의 경우 “「따르릉 사랑의 전화」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노력”

△△읍의 경우 “지역발전협의체 운영으로 인한 지역소통 활성화”

□□읍의 경우 “에콜리안 정선골프장 내 포토존 설치”

와 같은 타 기관과 차별화된 지역 특성에 맞는 자체 시책을 발굴 추진하여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음. 이런 기관별 자체 추진사업들은 모범사례로 우수사례 확산을 위해 전부서로 전파할 계획임.

II. 감사결과 총괄

□ 총 지적건수 : 49건(본처분 13, 현지처분 36)

구 분	본처분+ 현지처분	본처분				현지처분				재정상		신분상 (명)
		소계	시정	주의	통보	소계	시정	주의	통보	소계	금액(원)	
합 계	46	13	10	3	-	36	10	20	6	7	14,297,498	10
□□읍	19	6	5	1	-	13	4	6	3	2	2,934,767	4
○○읍	14	4	3	1	-	10	3	6	1	3	8,348,970	1
△△읍	13	3	2	1	-	13	3	8	2	2	3,013,761	5

□ 처분요구 세부사항

○ 행정상 조치

(단위 : 건)

구 분	계	주 의	시 정	통보	비 고
계	49	23	20	6	
본 처분	13	3	10	-	
현지처분	36	20	10	6	

○ 재정상 조치

(단위 : 원)

구 분		계		회 수		징수 · 세입		기타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7	14,297,498	5	6,252,528	2	8,044,970	-	-
본 처 분	소 계	6	6,277,528	5	6,252,528	1	25,000	-	-
	□□읍	2	2,934,767	2	2,934,767	-	-	-	-
	○○읍	2	329,000	1	304,000	1	25,000	-	-
	△△읍	2	3,013,761	2	3,013,761	-	-	-	-
현지처분	소 계	1	8,019,970	-	-	1	8,019,970	-	-
	□□읍	-	-	-	-	-	-	-	-
	○○읍	1	8,019,970	-	-	1	8,019,970	-	-
	△△읍	-	-	-	-	-	-	-	-

○ 신분상 조치

(단위 : 명)

구 분		계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기타
계		10	—	3	6	1	—	—
징 계	중징계							
	경징계							
훈 계		2	—	1	1	—	—	—
주 의		8		2	5	1		

Ⅲ. 주요 지적사항(요약)

□ 본 처분

① 시설공사 하자검사 미이행(○○읍, □□읍) ▶ 시정, 기관경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하자담보 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정기 하자검사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14일 전 최종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음

구 분	하자검사 미이행 건수				
	계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건 수	418	1	105	195	117
□□읍	219	1	37	101	80
○○읍	199	0	68	94	37

② 시설공사 계약업무 추진 부적정(○○읍) ▶ 시정(주의1)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의 업종 및 업종별 업무 내용을 고려하여 계약체결하여야 하나, “○○리 재해취약지 정비공사” 외 4건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사내용과 상이한 건설업자와 계약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함.

③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계상 부적정 및 정산 소홀(○○읍, ○○읍) ▶ 시정(주의3), 회수 4,556,528원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과 「건설기술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공사비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관리비를 계상하지 않고 계약체결하거나, 적정한 정산처리 없이 준공하여 사업비를 집행함.

구 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 관리비	
	미(未)계상	정산 미처리	미정산 금액(원)	정산 미처리	미정산 금액(원)
건 수	5	5	3,956,851	5	599,677
□□읍	3	1	2,342,767	-	-
○○읍	2	4	1,614,084	5	599,677

④ 경로당 운영비·냉난방비 집행 후 정산 미실시(○○읍) ▶ 시정(주의1)

- ○○읍 “@@경로당 외 9개소”의 경로당 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정산검사 및 보고를 실시하지 않음.

⑤ 시설공사 추진 부적정(공통) ▶ 시정(주의3) 회수 1,696,000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규정에 의하면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며, 공사 계약에서 설계 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약 금액을 조정해야 함에도 시정 및 설계변경을 하지 않아 사업비를 과다 지출함.

구분	공사명	계약금액(천원)	계약자	회수금액(천원)	비고
계	3건	48,750		1,696	
□□읍	○○14리 ○○일 농로포장 정비공사	17,650	선○○○(주) 대표 정○○	592	
○○읍	○○리 베레치길 마을안길 정비공사	13,500	하○○○(주) 대표 문○○	304	
△△읍	2022년 ○○리(나들목) 인도 개설공사	17,600	(주)샤○○○ 대표 전○○	800	

⑥ 이행강제금 체납처분절차 이행에 관한 사항(○○읍) ▶ 시정(주의1)

- 「건축법」 위반 건축주(최○○외 2건)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고있는 체납자에 대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촉고지 미이행 등 체납처분절차를 소홀히 함.

⑦ 공영차량 사용 부적정(○○읍) ▶ 주의, 기관경고

- 「정선군 공용차량 관리규칙」에 의한 배차신청관리 및 차량운행일지 규정을 준수해서 공용차량을 사용·관리하여야 하나, ○○읍은 공용차량(산타페 ○7어○904)을 관외 출장용으로 사용하면서 배차신청 없이 사용(5건)하거나 배차신청을 허위(4건)로 작성하는 등 공용차량 사용 관리에 소홀히 함.

⑧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읍) ▶ 시정(주의1), 추징 25,000원

-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주민등록증 자체의 결함으로 자연적으로 훼손된 경우, 성명, 생년월일 또는 성별이 변경된 경우, 주민등록증의 기재사항 중 주소 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 주민등록증의 변경 내용란이 부족한 경우, 자연적 재해·재난으로 인해 외과적 시술 등으로 용모가 변하여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 등의 수수료 징수의 예외 규정 및 면제 사유를 제외하고는 1명당 5천원의 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하나, △△읍은 주민등록증 재발급 업무를 처리하면서 이○○외 4인에 대해서 수수료를 미징수(5건 25,000)하는 등 수수료 부과징수 업무를 소홀히 처리함.

⑨ 시설공사 계약방법(분할발주) 부적정(○○읍) ▶ 주의(훈계2)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공사의 분할계약 금지)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동일 구조물공사 또는 단일공사의 경우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으나,

○○읍은 “○○읍 나들목 MTB 경관개선 조경공사” 외 5건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사시기(착공일, 준공일 등)와 장소가 동일하고 동일 공종(조경식재, 콘크리트 포장) 또는 단일 사업으로서 충분히 통합 발주가 가능한 사업임에도 공사량을 2개 지구(○○읍 나들목 MTB 경관개선 조경공사), 5개 지구(2021년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로 각각 2천만원 미만으로 분할 발주 등 계약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함.

□ 현지처분

① 공금계좌 관리 부적정(공통) ▶ 시정, 세입처리 8,019,970원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르면 읍면동의 지출원은 ‘지출업무담당’이며(재무·회계업무담당까지 지정 가능),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은 ‘지출업무담당자’이다. ○○읍은 공금계좌(재난관리기금 휴면 계좌 1, 민원제증명카드수납용 계좌1, 정부양곡대금 관리 계좌1)를, □□읍은 공금계좌(재난관리기금 휴면 계좌1, 정부양곡대금 관리 계좌1)를 회계관직 미지정자가 운영관리하면서 세입세출외현금회계처리를 하는 등 공금계좌 관리를 부적정하게 운영함.
- □□읍은 공금요금 자동이체 계좌를 운영하면서 2건의 공공요금 지출잔액 8,019,970원을 세입처리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공금계좌 관리에 소홀히 함.

② 지출예산 비목별 과목해소 부적정(공통) ▶ 통보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을 준수하여 지출예산을 집행하여야 함에도, ○○읍은 사무관리비, 재료비를 집행하면서 세출예산 집행기준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차재료 등 다과물품을 업무추진비가 아닌 사무관리비로, 종자보관용 냉장고를 구입하면서 적정 세출과목인 자산 및 물품취득비 아닌 재료비로 부정적하게 집행한 사실있고, □□읍은 타기관 직원급식비를 기관운영업무

추진비가 아닌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커피재료 등을 업무추진비가 아닌 사무관리비로, 일용임금 인건비를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아닌 시설비로, 소모품구입비를 사무관리비가 아닌 재료비로, ○○읍 직원의 급식비를 집행하면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아닌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부적정하게 집행함. □□읍은 타소속 직원 등이 포함된 급식비를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아닌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차재료 및 음료 등 다과류 지출에 업무추진비가 아닌 사무관리비로, 제설인부 인건비 및 보험료 등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아닌 시설비로, 화장지 등 소모품구입비에 사무관리비가 아닌 재료비로 부정적하게 집행함.

③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업무 소홀(공통) ▶ 주의

- 「농지법」 제6조(농지 소유 제한)에는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심사요령」에 따르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작성한 후 농업경영계획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고, 신청인이 작성한 농업경영계획서에는 취득대상 농지의 면적, 취득대상 농지의 농업경영에 적합한 노동력 및 농업기계·장비의 확보방안, 소유농지의 이용실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는 신청인이 투기 등 매매거래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고자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기재사항이 누락되지 않아야 함에도 읍면에서 발급된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중 ○○읍 15건, □□읍 39건, @@읍 128건이 농업경영계획서에 농업기계·장비의 확보방안 등이 미기재 되어 있음

④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안전관리 소홀(○○읍, △△읍) ▶ 시정, 주의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따르면 ○○읍은 특정소방대상물인 ‘○○읍 행정복지센터 건축물’에 대한 소방계획서를 작성·시행하지 않고,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종합정밀점검)를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지 않는 등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고, △△읍은 특정소방대상물인 ‘○○읍 행정복지센터 외 2개 건축물’에

대하여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보고서 제출기한을 도과하여 소방서에 제출하는 등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함.

⑤ 계약업무 추진 부적정(공통) ▶ 주의

○ 기술용역 계약업무 추진 부적정(○○읍)

- ○○읍에서 발주한 “○○15리(△조암-△암사) 등산로 개설공사 측량 용역”은 과업의 목적이 “실시설계”의 작성임을 알 수 있고, 따라서 관련 법령에 따라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를 필한 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에도, 일반측량업을 등록한 자와 부당하게 계약을 체결함.

○ 하도급 대금지급 부적정(○○읍)

- ○○읍은 “○○읍 야생화 축제장 환경개선공사” 외 4개 사업을 추진하면서 강원대금알림e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공사대금 청구지급을 처리한 함.

○ 시설공사 계약업무 추진 부적정(○○읍)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의 업종 및 업종별 업무 내용을 고려하여 계약체결하여야 하나, “신동읍 가사지구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사업” 외 1건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사내용과 상이한 건설업자와 계약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함.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부적정(○○읍, □□읍)

- ○○읍에서는 “○○18리 보행로 개설공사” 외 4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 요청에 의한 보도블럭추가 설치, 합벽식 옹벽 추가 반영, 고원식 횡단보도 추가 설치, 주택인접구간의 붕괴위험 해소를 위한 전석쌓기 추가 반영, 기존 시공구간과의 재료 동일성을 위한 전석쌓기 변경 등 당초 예측 가능한 별개공사로, 별도 계획수립 및 발주하여야 함에도 당초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설계변경 등을 통해 부적정하게 계약을 체결함.
- □□읍에서는 “직전리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공사” 외 1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 요청에 의한 석축찰쌓기 추가반영, 아스콘 덧씌우기 추가 시공 등 당초 예측 가능한 별개공사로, 별도 계획수립 및 발주

하여야 함에도 당초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설계변경 등을 통해 부적정하게 계약을 체결함.

⑥ 건축분야 업무처리 소홀(공통) ▶ 시정

○ 건축신고 처리 업무 소홀(○○읍, □□읍)

- 「건축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건축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읍 ○○리 62-121번지 변○○외 4건의 건축신고 사항에 대하여 신고일부터 1년이 경과하여, 효력상실된 건축신고 사항에 대해 효력상실 고지, 착공신고 및 사용승인처리 하지 않았음.
- 건축물의 대지가 2m이상이 도로에 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축신고 수리시 「건축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도로의 지정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읍 직전리 612-1번지 내 단독주택 건축신고(20022-□□읍-신축신고-2) 건에 대해 건축물의 대지가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건축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도로지정을 하여야 하나 진출입도로 부분에 대하여 공유수면 점용·사용 협의 만하고 도로의 지정 없이 건축신고수리를 하였음.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업무 소홀(○○읍)

- 신고 수리된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1항 규정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건축주에게 ①존치기간 만료일 ②존치기간 연장 가능 여부를 고지하여야 하며,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가설건축물의 건축주는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신고하여야 함, 그러나 ○○읍에서는 건축행정시스템상 ○○읍 ○○리 424번지 외 10건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존치기간 만료된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존치기간 만료 안내, 존치기간 연장 및 철거 지시 등 업무 소홀.

○ 가설건축물 사후관리(존치기간 연장) 소홀(□□읍)

- □□읍 □□리 429번지 등 7개소 상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존치기간 만료된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존치기간 만료 안내, 존치기간 연장 및 철거 지시 등 업무 소홀.

⑦ 경로당 운영보조금 정산 소홀(□□읍) ▶ 주의

- “□□11리 경로당 외 7개소”의 경로당 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정산 절차를 진행하면서 지출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지출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에도 이에 대한 보완 조치 없이 정산 완료하는 등 경로당 보조금 정산 업무를 소홀히 함.

⑧ 경로당 운영비·난방비 집행 후 정산 미실시(□□읍) ▶ 시정

- □□읍 관내 26개 경로당에 운영비 및 난방비 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정산검사 및 보고를 실시하지 않음.

⑨ 찾아가는 복지상담 업무 소홀(□□읍, □□읍) ▶ 통보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내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과 연계하여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저소득 위기가구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야 하는데, □□읍은 2022년 찾아가는 복지상담 모니터링 계획추진에 있어 연간 모니터링계획 133건 중 102건을 단순상담으로 1월에 처리하였고, □□읍에서는 2021년도에 찾아가는 복지상담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찾아가는 복지상담 수립 대상가구(87가구)에 대하여 방문상담을 미실시 하는 등 맞춤형복지서비스 업무를 소홀함.

⑨ 위기가구의 발굴업무 처리 소홀(□□읍) ▶ 주의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내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과 연계하여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저소득 위기가구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야 하는데, 사북읍에서는 2020년 동안 3차에 걸쳐 위기가구로 발굴된 33건에 대해 조사 및 상담 업무를 추진하지 않는 등 맞춤형복지서비스 업무를 소홀함.

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부적정(○○읍) ▶ 주의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3조(적용범위)에 의하면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자기공사자가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하는데, ○○읍에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대상인 사북1리(산수빌 앞) 보행안전난간 설치 공사 외 1개 사업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지 않고 계약 체결하여 준공 처리함.

⑪ 대형폐기물 배출수수료 부과처리 부적정(○○읍) ▶ 주의

- 「정선군 폐기물관리 조례」에 의하면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5톤 미만의 일시에 다량으로 배출되는 폐기물과 대형폐기물은 별표1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 후 배출하여야 하며,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9호서식에 의거 당해 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대형폐기물 배출자가 배출신고를 할 경우에는 신고서에 정선군 수입증지를 첨부함으로써 처리수수료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고한읍에서는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업무를 처리하면서 총 15건에 대하여 규정된 적정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음.

⑫ 장애인 진단서 발급 및 검사비 지원 업무 소홀(○○읍) ▶ 시정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6(복지서비스에 관한 장애인 지원 사업)의 제1항에 의거 읍면장은 등록된 장애인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가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장애인 지원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또한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I 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신규 장애인등록 신청자와 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등록장애인인 경우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진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신청처리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읍에서는 김○○ 외 3명의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가 장애인등록과정에서 신청과 동시에 진단서 발급 및 검사비 지원 서비스를 처리하여야 하나 8개월 동안 4건을 누락하여 처리하지 않았음.

⑬ 전입신고 업무처리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읍, □□읍) ▶ 주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3조에 따르면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전입지의 세대주 또는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과 전(前) 거주지의 세대주 또는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이 다른 경우에는 전 거주지의 세대주,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 또는 전입자의 확인을 하고, 전입 신고된 내용이 포함된 사후확인용 자료를 이장이 사실인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군수에게 알려야 하며, 통보받은 사후확인용 자료에 관계공무원이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야 함.
- 그런데 ○○읍 총 53건, □□읍 총82건의 전입신고서를 접수하면서 세대주의 서명이나 날인, 전입자 확인, 신고인 서명이나 날인 등 신고서상 기재사항이 누락 되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전입신고하였고, 전입신고 사후확인서에 제출(확인) 일자 및 거주여부 미확인 사항이 다수 발생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없이 사후 확인용 자료를 접수 및 편철하는 등 주민등록 전입신고 업무를 소홀히 함.

⑭ 인감증명 대리발급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읍, □□읍) ▶ 주의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인감증명서발급기관에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대리인이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과 함께 위임자 본인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위임장의 기재사항(위임의사를 표시한 위임자의 서명 또는 날인,

지참한 신분증의 종류, 유효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위임일자 등)이 올바르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미비사항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한 후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함.

- 그런데 □□읍은 배○○외 11건, ○○읍은 이○○외 38건의 인감증명서를 대리발급하면서 위임장의 기재사항인 위임자의 서명 또는 날인, 신분증 종류, 유효기간의 기산 기준이 되는 위임일자 등 오기, 누락 및 미기재 등 미비사항이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 및 보완요구 없이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는 등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에 관한 업무를 소홀히 함.

⑮ 야생화 판매대금 세입처리 관련(○○읍) ▶ 통보

- 「지방회계법」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르면 수입금출납원이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을 직접 수납할 때에는 지체없이 그 수납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납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수납금의 납입)에 따르면 수입금출납원이 지방세 또는 그 밖의 세입금을 직접 수납한 경우에는 수납한 날의 다음 날까지 지정된 금고에 납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고한읍에서 야생화 전시 판매장을 운영하면서 판매한 수입금을 수납한 날의 다음 날까지 세입처리 하여야 하나 일반적으로 주단위로 세입처리한 사실이 확인됨.

⑯ 행사실비지원금 집행관리 소홀(○○읍) ▶ 주의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행사실비지원금은 “교육·세미나·공청회·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 및 교통비(실비)로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는 매식비 기준단가에 준하여 계좌입금하며(단체급식 및 다과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 사용을 원칙함.) 교통비 및 숙박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고(일비는 지급하지 않음) 있음.
- 그런데 ○○읍에서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이장 수련회 행사실비지원금을 집행하면서 급량비(급식비) 실비 산출내역을 작성하지 않았고, 참석자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등 행사계획에 맞게 수련회가 개최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사후정산도 없이 예산액에 맞춰 지출하여 관련 규정을 소홀히 함.

⑰ 공용차량 사용 부적정(○○읍) ▶ 주의

- 「정선군 공용차량 관리규칙」에 의한 배차신청관리 및 차량운행일지 규정을 준수해서 공용차량을 사용·관리하여야 하나, 신동읍 공용차량(○○두9○○1)을 관외 출장으로 사용하면서 배차신청없이 사용하거나, 배차신청을 출장목적 및 목적지가 다르게 작성하는 등 공용차량 사용·관리에 소홀히 함.

⑱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선발 업무 추진 소홀(○○읍) ▶ 주의

-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에서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의 선발·운영 시 반드시 종합지침을 준수하도록 정하면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선발에 취업취약계층의 우선적 선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의5에 따른 통합정보전산망의 하나인 일모아시스템 사용을 통해 참여자 정보를 관리하고 매월 참여자 현황을 의무적으로 현행화하도록 정하고 있음.
- 그런데 ○○읍에서는 2019년 7월 ~ 2022년 10월까지 총 6번의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선발 절차를 통해 48명의 진화대를 채용하면서 종합지침에 따른 일모아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취업취약계층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수령하는 등의 취업취약계층의 우선적 선발을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함.